

중노위와 지노위는 독자적인 심판을 통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한 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8.4.(화)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처럼 초심과 재심이 엇갈린 것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한 추상적인 법 조항과 판단 시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 해석지침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 내용

-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26.3.10.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사건에 대하여 개정법·시행령 및 관련 해석지침·매뉴얼 등을 토대로 공정한 판단 및 판·결정을 하고 있음
 - 동일한 기준 하에서도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중노위의 재심 결정 중 76%가 하청노조의 신청을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함
- 또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 46건 중 중노위와 지노위의 판단이 다른 사건은 5건(10.8%)으로 중노위와 지노위의 판단이 90% 정도 일치하였고, 이 중 3건(6.5%)에 대하여만 원청의 사용자성이 새롭게 인정되었음
 - 법원의 심급제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지노위의 법령 해석 및 판단은 중노위 재심단계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 이에 대해 기사 내용 중 ‘초·재심이 엇갈린 것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한 추상적 법 조항과 불명확한 정부 해석 지침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7.31.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중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132개소인데, 그 중 86개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반면,
 -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로 진행된 원청은 21개소에 그침
 - * 나머지 25개소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거나, 공고 등을 검토 중
 - 따라서 상당수의 원청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노위 및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자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담당자	서기관	정장석 (044-202-761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책임자	과 장	김범석 (044-202-8231)
		담당자	사무관	박재형 (044-202-8242)

